

2000. 12. 23(土)

제6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

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總務社會委員會

제천시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2. 2 제천시장
나. 회부일자 : 2000. 12. 4
다. 상정일자 : 2000. 12. 19(제6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이춘호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규제정비 차원에 따라 동조례의 내용중 규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남용의 우려가 있는 일부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개정

- 제6조(위탁의 정지 및 취소) 1항 제4호 기타 사정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태훈)

○ 법규적검토

- 동 조례 제6조(위탁의 정지 및 취소) 1항 제4호의 경우는
 - 기타 사정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“사정”이라 는 용어는 “시장”의 오기임이 분명하고

- “시장”이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“공익상”과 “인정할 때”라는 개념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남용될 수 있는 우려가 농후하며 이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수반하게 될 것임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○ 행정적 검토

- 노인복지관 수탁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규제조항이 동 조문의 취지인 바, 위에 적시한 바대로 영조물 관리의 효율적 합목적적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남용의 우려가 있고 동조 제 1항 1, 2, 3호에 의해서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으므로 행정규 제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없 음”

5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7. 심사보고 불임서류

제천시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